

#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1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1월 13일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)

### □ 제안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(2003. 7. 29, 법률 제6952호)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(2004. 7. 29, 보건복지부령 제290호)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함.(안 제3조, 별표 3호)
- 과태료 납부기한 및 독촉장 발부기한을 30일과 15일로 각각 연장함. (안 제7조)
- 강제징수 및 과태료귀속 규정을 각각 삭제함.(안 제4조, 제11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성인인증장치가 청소년들에게는 살 수 없도록 확인하는 장치인가요?</p>	<p>○ 그렇습니다. 신분증이나 기타 성인인증을 확인하는 신분확인장치를 담배자판기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</p>
<p>○ 현재 우리시에 담배자판기가 설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?</p>	<p>○ 현재 삼신교통 사무실에 1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.</p>
<p>○ 우리시는 조례상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는 설치되었으며,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?</p>	<p>○ 다른 곳은 모두 철거가 되었으나 삼신교통 1대만 회사여건상 처리를 못했습니다, 향후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/p>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41호
의결 년월일	2005.1.18 (제117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1. 6.  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(2003. 7. 29, 법률 제6952호)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(2004. 7. 29, 보건복지부령 제290호)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함.(안 제3조, 별표 3호)
- 나. 과태료 납부기한 및 독촉장 발부기한을 30일과 15일로 각각 연장함.(안 제7조)
- 다. 강제징수 및 과태료귀속 규정을 각각 삭제함(안 제4조, 제11조)

##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,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3호(중전의 제2호)중 “법 제9조제2항의”를 “법 제9조제4항 전단의”로 한다.

2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전에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)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.

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중 “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”를 “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”로 한다.

별표중 제3호란 및 제4호란을 각각 제4호란 및 제5호란으로 하고, 동표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4호(종전의 제3호)의 근거란중 “제34조제2항제1호”를 “제34조제2항제2호”로 하고, 제5호(종전의 제4호)의 근거란중 “제34조제2항제2호”를 “제34조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3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	50	150	200
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3조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7조(과태료 처분통지 등) ①(생 략)</p> <p><u>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부과대상) ----- ----- -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<u>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3. 법 제9조제4항 전단의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중전의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(중전의 제4호와 같음)</p> <p>제7조(과태료 처분통지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전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정안
<p>제8조(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)</p> <p>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강제징수)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,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</p> <p>제11조(과태료의 귀속)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(준용)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<u>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8조(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)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한다.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제12조(준용)----- ----- -----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 표] 과태료 부과기준(제4조관련)					[별 표] 과태료 부과기준(제4조관련)				
위 반 내 용	근거	부과금액(단위:만원)			위 반 내 용	근거	부과금액(단위:만원)		
		1차	2차	3차			1차	2차	3차
<신 설>					3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 인인증장치가 부착 되지 아니한 담배자 동판매기를 설치하 여 담배를 판매한자	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제2 항제1호	50	150	200
3. (생 략)	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제2 항제1호	50	150	200	4. (종전의 제3호와 같음)	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제2 항제2호	50	150	200
4. (생 략)	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제2 항제2호	50	150	200	5. (종전의 제4호와 같음)	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제2 항제3호	50	150	200